### 大田直轄市女性會館設置吳運營條例案

議案 170

提出年月日: 1992. 10. 提 出 者:大田直轄市長

o 女性의 資質向上과 能力開發로 社會參與를 促進하고, 低所得層 女性의 自立基盤 造成과 女性福祉 增進에 寄與하기 위하여, 女性 會館을 設置 運營하고 자함.

### 2. 主要骨子

가. 位置는 西區 桃馬2洞 484-21番地로 함(案 第2條)

- 나. 業務는 아래의 業務를 管掌함(案 第3條)
  - (1) 低所得層 女性의 經濟的 自立基盤 造成을 위한 技術教育
  - (2) 女性資質 向上을 위한 敎養講座 및 趣味敎室 運營
  - (3) 女性의 餘暇善用을 위한 副業指導 및 就業斡旋
  - (4) 家庭福祉 增進을 위한 各種相談 및 生活指導
  - (5) 就學前 어린이 受託保護
  - (6) 傳統 婚禮室 運營
  - (7) 其他 女性福祉增進 및 能力開發에 必要한 事項
- 다. 女性會館長은 地方 書記官 또는 4級 相當 別定職 地方公務員으로 補하고, 館長은 市長의 命을 받아 館務을,處理하며,所屬 公務員을 指揮·監督함(案 第4條)
- 라. 女性會館 運營에 必要한 公務員의 定員과 職級은 市長이 따로 정함.(案 第5條)

- 마. 會館使用은 女性會館長의 許可를 받아야 하고, 使用許可를 할 때에는 使用料를 事前 徵收하되, 公益上 必要하거나, 特別한 事由가 認定되는 境遇에는 減免할 수 있음 (案 第6條, 第7條)
- 바. 納付된 使用料는 返還하지 아니함. 다만, 다음 各 號의1 에 해당될 때에는 使用料의 全部 또는 一部를 返還할 수 있음.(案 第8條)
  - (1) 會館의 特別한 事情에 의하여 使用이 取消 또는 停止될 때
  - (2) 天災地變, 其他 不可抗力的인 事由로 使用이 不可能 할 때
  - (3) 使用豫定日 5日前에 使用者가 取消願을 提出할 때
- 사. 다음 各 號1에 해당할 境遇에는 利用制限 또는 使用許可를 取消 할 수 있음(案 第9條)
  - (1) 傳染病 및 精神疾患者
  - (2) 公共秩序를 해할 우려가 있는 者
  - (3) 使用許可 目的에 違背될 때
  - (4) 其他 利用制限 또는 許可 取消할 事由가 있다고 認定되는 者
- 아. 會館施設中 委託運營이 必要하다고 認定 될 때에는 事業의 一部 또는 全部를 民間 또는 設置目的이 同一한 非營利法 人에게 委託運營 할 수 있음(案 第10條)
- 자. 會館을 利用할 수 있는 者는 大田直轄市內에 居住하고 있는 婦女者와 館長이 認定하는 者로함(案 第11條)
- 차. 館長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講師를 委囑 및 招聘하여 講義와 敎材執筆을 할 수 있고, 豫算의 範圍內에서 手當을 支給 할 수 있음(案 第12條)

- 카. 會館의 使用許可를 받은 者는 館長의 同意없이 그 使用 權을 他人에게 讓渡하거나 轉貸할 수 없음(案 第13條)
- 타. 使用者가 女性會館 使用 施設物지 弘報物을 附着할 때에 는 事前에 館長과 協議하여야 함(案 第14條)

### 3. 參考事項

### 가. 女性會館 建築 概要

○ 位 置: 西區 挑馬洞 484-2番地外 14筆地

○ 規 模 \_\_敷地: 1,787坪 \_\_建物: 2,059坪

地下1層	地			上		/ <del>**</del>	+
	計	1層	2 層	3 層	4層	備	考
410 坪	1,649	562	390	400	297		

○ 事業 驚:6,816百萬원(國費:423,市費:6,393)

○ 工事期間: '91. 6. 27 ~ '92. 10. 31

○ 進行狀況: '92. 9. 27 竣工完了

## 나. 他 直轄市와의 比較

市	別	會館規模	館 長 職 級	機 構	公務員 定員
大	田	2,059 坪	행정ㆍ별정 4급	2계 1상담실	22
釜	Щ	1.311 //	"	"	23
大	БB	1.725 //	"	"	26
1=	311	1,608 //	// .	"	21
光	州	666 "	. "	//	22

#### 대전직할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능력개발 및 저소득층 여성의 자활능력지원과 부녀자 상담 및 부녀복지증진등을 위한 대전직할시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여성회관은 대전직할시 서구 도마2동 484-21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여성회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 1.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교육
- 2. 여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
- 3. 여성의 여가선용을 위한 부업지도 및 취업알선
- 4. 가정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생활지도
- 5. 취학전 어린이 수탁보호
- 6. 전통 혼례실 운영
- 7. 기타 여성복지 증진 및 능력개발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관장) ① 여성회관에 여성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두며, 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관장은 대전직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관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5조(공무원) 여성회관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용허가) 회관의 사용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사용료 징수)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보육료는 지방보육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고시금액에 의한다.
- 제8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 1. 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3. 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 제9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등)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제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 1. 전염병 및 정신질환자
  -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 3.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 될 때
  - 4. 기타 이용제한 또는 허가 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10조(위탁운영) 회관이 운영하는 시설중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또는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 제11조(이용자의 범위)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대전직할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부녀자
  - 2.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자
- 제12조(강사) ①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자는 외부 인사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양도 및 전대금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동의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4조(홍보물 부착) 사용자가 여성회관 사용허가 시설물에 공연전시회등의 관련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 표]

# 여성회관사용료

### 1.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1			
구 분	사용기준	요. 급	ㅂ) 고
1. 시설사용료(평일 주간기준) 가. 대 회의실 나. 전통훈례실 다. 생 활 관 라. 스포츠교실 2. 기 술 교 육 고 3. 취 미 교 실 4. 도 서 실 5. 식 당	1 회 1 회 1인 1박 1회 2시간 각목당(1인1월) " 1 회 1 식	50,000 90,000 2,000 10,000 10,000 10,000 500 시중요금의 80%이하	<ul> <li>○ 토, 일, 공휴일은 평일요금의 20% 가산</li> <li>○ 야간은 주간요금의 20% 가산</li> <li>○ 전통본례예복 및 집기 포함</li> </ul>

# 2. 부속시설 사용료

	·							
-	뚱	명		단	위	사 용 료	н]	고
3	리 아	ኍ		1	회	20,000	오전, 오후, 야간 2	각 1회로 본다 -
,	· 난방	사용		1	희	50,000	"	
,	영 사	7		1	회	20,000	//	
	조 .	명		14	간	15,000	사용 1시간미만은 1	시간으로 본다
음	마	٥)	<u>a</u>	1	개	2,000	3개이상 사용시에 현	산함
-	무 선	마이	ュ	1	개	3,000	"	
향	녹	음	7]	1	회	3,000	오전, 오후, 야간	각 1회로 본다
ઝ	녹	음 .	豆	1	회	5,000	단, 릴 테이프는 10	),000원

# 大田直轄市 女性會館設置 및 運營條例案 審査報告書

1992 . 11 .

文教 • 社會 委員會

# 大田直轄市 女性會館設置 및 運營條例案 審 査 報 告

1992年 11月 6 日 文教・社會 委員會

### 1. 審 查 經 過

가. 提案日字 및 提案者 : 1992年 10月 14日, 大田直轄市長

나. 回附日字: 1992年 10月 15日

다. 上程日字:第15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第1次 文教・社會委員會 (1992. 10. 22)

上程,審查,留保

第16回 大田直轄市 議會(臨時會)第1次 文教・社會委員會 (1992. 11. 6)上程、審査、修正 議決

### 2. 提案 說明 要旨(提案說明者:家庭福祉局長)

가. 提案理由

女性의 資質向上과 能力開發로 社會參與를 促進하고, 低所得層 女性의 自立基盤 造成과 女性福祉 增進에 寄與하기 위하여, 女性會館을 設置 運營하고 자함.

#### 나. 主要骨子

- (1) 位置는 西區 挑馬2洞 484-21番地로 함. (案 第2條)
- (2) 業務는 아래의 業務를 管掌함. (案 第3條)
  - (가) 低所得層 女性의 經濟的 自立基盤 造成을 위한 技術教育
  - (나) 女性資質 向上을 위한 敎養講座 및 趣味敎室 運營
  - (다) 女性의 餘暇 善用을 위한 副業指導 및 就業斡旋
  - (라) 家庭福祉 增進을 위한 各種相談 및 生活指導
  - (마) 就學前 어린이 受託保護
  - (바) 傳統 婚禮室 運營
  - (사) 其他 女性福祉增進 및 能力開發에 必要한 事項
- (3) 女性會館長은 地方 書記官 또는 4級 相當 別定職 地方公務員으로 補하고, 館長은 市長의 命을 받아 館務를 處理하며,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함. (案 第4條)
- (4) 女性會館 運營에 必要한 公務員의 定員과 職級은 市長이 따로 정함. (案 第5條)
- (5) 會館使用은 女性會館長의 許可를 받아야 하고, 使用 許可를 할때에는 使用料를 事前 徵收하되, 公益上 必要하거나, 特別한 事由가 認定되는 境遇에는 減免할 수 있음. (案 第6條, 第7條)
- (6) 納付된 使用料는 返還하지 아니함. 다만, 다음 各 號의 1에 해당 될 때에는 使用料의 全部 또는 一部를 返還할 수 있음. (案 第8條)
  - (가) 會館의 特別한 事情에 의하여 使用이 取消또는 停止될 때
  - (나) 天災地變. 其他 不可抗力的인 事由로 使用이 不可能할 때
  - (다) 使用豫定日 5日前에 使用者가 取消願을 提出할 때

- (7) 다음 各 號1에 해당할 境遇에는 利用制限 또는 使用許可를 取消할 수 있음. (案 第9조)
  - (가) 傳染病 및 精神疾患者
  - (나) 公共秩序를 해할 우려가 있는 者
  - (다) 其他 利用制限 또는 許可 取消할 事由가 있다고 認定되는 者
- (8) 會館施設中 委託運營이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事業의 一部 또는 全部를 民間 또는 設置目的이 同一한 非營利 法人에게 委 託 運營 할 수 있음 (案 第10條)
- (9) 會館을 利用할 수 있는 者는 大田直轄市內에 居住하고 있는 婦女者와 會長이 認定하는 者로함. (案 第11條)
- (10) 會長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講師를 委囑 및 招聘하여 講義와 教材執筆을 할 수 있고, 豫算의 範圍內에서 手當을 支給할 수 있음. (案 第12條)
- (11) 會館의 使用許可를 받은 者는 館長의 同意없이 그 使用權을 他人에게 譲渡하거나 轉貸할 수 없음. (案 第13條)
- (12) 使用者가 女性會館 使用 施設物에 弘報物을 附着할 때에는 事前에 館長과 協議하여야 함. (案 第14條)

### 3. 專門委員 檢討 報告要旨(專門要員:金 鎭 鎬)

이 條例案은 女性들의 資質向上과 能力開發로 社會 參與를 促進하고, 低所得層 女性의 自立基盤 造成과 女性福祉增進에 寄與하기 爲하여 女性會館을 設置 運營한다는 內容으로써, 酉區 挑馬洞에 敷地

1,787坪, 建物 面積 2,020坪 規模의 會館廳舍를 確保하였으며, 1992. 12. 開院을 目標로 推進하고 있는 內容이 되겠음.

本 條例案의 主要內容을 살펴보면,

첫째, 案 第3條에 女性會館의 管掌 業務를 規定하고 있는 바, 低所 得層 女性들의 技術 敎育. 女性의 資質向上을 爲한 敎養講座 및 趣

味教室 運營, 就學前 어린이 受託保護, 傳統 婚禮式 運營等 女性의 福祉 向上에 寄與할 수 있는 內容으로 하고 있으며.

둘째, 案 第4條와 5條는 職制에 관한 內容으로 女性會館에 館長을 두되 館長은 地方書記官 또는 4級相當 別定職公務員으로 補하며.

以下 必要한 公務員의 職級과 定員은 規則으로 定하도록 委任하고 있는 바, 1992. 9. 26. 內務部長官으로부터 2係 1 相談室 等 總 22名의 人員으로 그 職制 承認을 得한 事項이 되겠음.

셋째, 本 女性會館의 使用 및 使用料 徵收에 관한 內容으로써, 會館의 使 用은 館長의 事前 許可를 받도록 하였으며, 使用 許可時 施設物

使用에 대한 소정의 使用料를 받도록 規定하고 있는 바, 使用料金 策定에 있어서 한밭圖書館, 市民會館 等 性格上 類似 機關과

의 형평을 考慮하고 隣近 他 都市와 비슷한 水準으로 調整하였다고 하나 本 會館의 特性上 多數의 大衆이 負擔없이 利用되어야 할 점

등을 勘案할 때 좀 더 저렴한 金額으로 策定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思料됨.

넷째, 案 第10條(委託運營)에서 會館施設中 館長이 必要하다고 認定 할 때에는 그 事業의 一部 또는 全部를 民間 또는 非營利 法人에게

委託 運營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는 바, 이는 식당, 매점 등 性格上 直營이 어려운 分野에 대한 運營의 묘를 기하기 위한 措置라고는

하나 基本施設 또는 이에 부수되는 附屬施設에 대한 委託 運營은 자 첫 營利를 追求하는 商業爲主로 과행 運營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防止할 수 있는 明文 規定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其他 本 會館 利用과 關聯한 利用者의 範圍, 講士 招聘 등의 事項을 規定하고 있 는 內容으로써 별다른 問題點은 없는 것으로 思料됨.

以上에서 보고드린 大田直轄市 女性會館 設置 및 運營條例案은 母子福祉法等에서 規定하고 있는 低所得女性의 自活 能力 培養과 女性들

의 社會 參與 促進等 女性의 福祉 增進에 寄與하기 위한 것으로써, 별다른 問題點은 없는 것으로 思料됨.

- 4. 質疑 및 答辯要旨:省略
- 5. 討論要旨: 없음
- 6. 審 査 結 果: 修正案 可決

### 7, 修正案의 要旨

가. 提出日字 및 提案者: 1992年 11月 6日 文教・社會委員長

나. 修正理由: 別添

다. 修正 主要 骨子: 別 添

8	少數	意見	聽取	:	없	음
$\circ$ .	<i></i>	/W/JU	7/01	•	$H\Delta$	$\boldsymbol{L}$

9.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 대전직할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출년월일: 1992 . 11 . 6 .

제 출 자:문교사회위원장

## 1. 수 정 이 유

○ 본 조례안 제10조 (위탁운영)로 규정하고 있는 「회관이 운영하는 시설중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

는 전부를 민간 또는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은 공공 복리 증진에 우선을 두고 운영

되어야 할 여성회관이 무분별하게 위탁 운영됨으로써 자칫 상업 위주로 파행 운영될 소지가 있으므로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2. 주 요 골 자

ㅇ 대전직할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0조

「회관이 운영하는 시설중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또는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 리 법인에게 위탁 운영 할 수 있다」를 삭제함.

## 대전직할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대전직할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ㅇ 안 제10조를 삭제한다.
- 안 제11조내지 15조를 제10조내지 14조로 한다.